

의안번호	2125882
의 퇴 인	조승래 의원
회 답 일	2023. 12. 14.
추 계 번호	23B4396
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외부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,000만원(연평균 800만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과학기술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	8	8	8	8	8	40	8

주: 1.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8인, 연 3회 개최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소청심사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 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교원의 임면)	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제7항)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은 30일 이내에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(제8항 신설) ※ 현행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이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, 개정안은 그 전 단계로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신설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16조의4(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) 신설	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둠(제1항) 과학기술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과학기술원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(제2항) 그 밖에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6조(교원의 임면) 안 제16조의4(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) 신설	○	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불복 평균 건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3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은 19% 수준으로, 개정안에 따른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과학기술원 자체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,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는 기관운영비 성격이므로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된다고 가정함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 불복 시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추가함 (안 제16조제7항 및 제8항, 제16조의4 신설)
 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 연도별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관련 심사 건수는 연 83건 수준¹⁾이고, 2023년 기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참석 수당은 기획재정부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15~20만원, 안건 검토비는 1회당(심사 안건 약 30건) 85만원임²⁾

[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운영 방식]

- 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, 비상임위원 10인
- 격주마다 개최 / 10시부터 약 19시(상정 안건 수에 따라 달라짐)까지 진행
- 매 회차당 약 30건 심사
- 비상임위원은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되는 안건 전체*를 검토하며, 심사의회의 당일에는 당사자 신문 및 결정에 참여함
- * 정계, 재임용 거부처분,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관련 청구서, 답변서, 추가 서면 및 증빙자료 전체

[참고]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

- 위원장, 1인, 상임위원 4인, 비상임위원 7인
- 월 8~9회 개최 / 반일 심사
- 매 회차 약 10건 심사
- 비상임위원 수당 : 참석 수당 150,000원 / 검토 수당 250,000원

자료: 교원소청심사위원회

1) 2021년 72건, 2022년 79건, 2023년 98건

2) 「교원소청에 관한 규정」

제21조(수당)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-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소속 교원의 최근 5년간 재임용 거부처분 및 불복 건수는 평균 2.6건이었음

[표 2]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및 불복 현황

(단위: 건)

연도	거부처분 건수	불복 건수
2019	1	1
2020	4	4
2021	1	1
2022	4	4
2023	3	3
평균	2.6	2.6

자료: 한국과학기술원

-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및 불복 건수가 최근 5년과 유사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15인 중 과반수인 8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면,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800만원 등 향후 5년간 4,000만원으로 추정

－ 외부위원 8인 × 33만원 × 3회 = 792만원

※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달리 ‘교원의 재임용 처분에 대한 심사’ 단일 건으로 예상되므로,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회의 참여 단가를 회의참석 수당 30만원³⁾, 안건 검토비 3만원(85만원÷30건)으로 적용

[표 3]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8	8	8	8	8	40	8

주: 1. 과학기술원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8인, 연 3회 개최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소청심사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기획재정부,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

－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내(서면심사 10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이현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